

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 기준 (제39조의2제1항 관련)

기 준	항목	확보율(%)
대학 전체	전임교원 확보율	50
	교사(校舍) 확보율	100
모집단위	전임교원 확보율	50
	교원 확보율(전임교원 · 산학겸임교원 · 초빙교원 포함)	80

비고

1. 교사확보율은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4조에 따라 계산한다. 이 경우 개설 과정이 주간이면 대학 전체 주간 과정, 야간이면 대학 전체 야간 과정의 편제정원(학위전공심화과정의 편제정원을 포함한다)을 기준으로 한다.
2. 교원확보율은 제43조에 따른 기능대학의 교원 등의 정원에 따라 계산한다. 이 경우 학생정원은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한다.
3. 편제정원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말한다.